부여군 공고 제2026-2117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 입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 10. 28.
부여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부여 고도이미지찾기사업 한식담장 설치공사		
추 정 금 액		금591,638,000원	견적제출개시일시	2026. 11. 03.(화), 10:00
도	**기 초 금 액**	**금561,774,000원**	견적제출마감일시	2026. 11. 05.(목), 10:00
급	추 정 가 격	금510,703,637원	개 찰 일 시	2026. 11. 05.(목), 11:00
액	부가가치세	금51,070,363원	개 찰 장 소	부여군 전자견적 집행관 PC
도급자설치관급액		금29,864,000원	관급자설치관급액	-

※ 본 공사는 부여 고도 이미지 개선을 위한 고도 지정지구 내 한식담장설치를 위한 전문공사로, 현장 여건상 철저한 공정, 품질, 시공 관리 등 전문공사업 등록 업체의 전문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에 관한 안내>

1. 부적격 건설사업자의 근절과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 결과 입찰참가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95조 및 형법 제315조 적용 등

2.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실태조사 대상 업체(낙찰예정 1순위 업체)는 본 공고문의 **'기타사항: 카.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제출서류'** 에 명시돼 있는 **등록기준 심사서류**를 **개찰일 다음 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해당 구비서류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출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된 경우,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위와 동일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입찰 참가 시 주의사항(필독)

◈ 본 입찰은 부여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니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에 첨부된 계약이행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업체별 재투찰 안내는 별도로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 공사입찰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사입찰 공고서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부여군 계약이행 특수조건(공고문 붙임2 참조)

[유의사항]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A값 내역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6,705,635	8,860,019	881,120	9,092,723	4,290,114	-	-	29,829,611

2. 사업개요

가.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나. 공사현장: 부여군 부여읍 의열로 43일원(부여 유스호스텔~부여문화원)

다. 사업내용: 한식담장 설치 L=274.42m, 자연석 석축쌓기, 전벽돌 치장쌓기 등

라. 업종별 추정금액

업 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석공사)	591,638,000원(100.00%)	561,774,000원(100.00%)

3. 입찰 및 계약방식: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충청남도), 적격심사대상,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대상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석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자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이행 규모 및 하자책임을 고려하여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문의: 문화유산과 고도육성팀(041-830-2633)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부여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특히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다. 자격 없는 입찰대리인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특히 입찰 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참가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 대리인의 자격 확인을 위해서 아래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등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당해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가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금액(A값)은 제외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460,591,864원(기초금액 중 재료비 · 노무비 ·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라. 적격심사 세부기준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	평가비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석공사업)	금510,703,637원	100%

마. 협회 실적확인서 외에(같은 회계연도 안에서 누락분과 협회 실적이 혼재될 경우 협회 실적만으로 인정함) 민간공사실적 제출 시 시설공사실적증명서, 인허가서류(관련될 경우에 한함),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 및 부가가치세공급가액증명서(도급계약서포함)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분명한 자료에 해당되어 실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하도급 공사는 원도급공사까지 준공되어야 하며, 이미 신고되어 확정된 협회실적에 포함된 실적증명 별도 신청 시 불인정함(협회 실적확인서로 갈음됨)).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해 결정합니다.

사.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 선택 시 기준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 협회에서 조사·발표한 최종연도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아. 입찰자가 신용평가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합니다.

자.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무효 처리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합니다.

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르면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카.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10.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부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정산요령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합니다.

2)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로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1)" 을 준용합니다.

나.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가. 계약업체는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나. 계약 체결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1]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건설기계 임차 시,건설기계관리법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체결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사본을 제출(사업부서 경유)하여야 합니다.

1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5.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6.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안내

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산림공사 포함)]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 및 대금 등을 지급 처리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지킴이" 결제계좌(4계좌 : 고정계좌, 선금관리계좌, 노무비전용계좌, 일반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를 비롯한 하도급자의 대금과 노무비, 자재 및 장비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 지킴이)]에서 해당 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1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본 공사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부여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의 적용대상인 경우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다”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8.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9.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설계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별 유의서,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군 해석에 따릅니다.**

라. **낙찰자는 지역업체(부여군)의 공사 참여 확대를 위해 자재구매,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부여군) 이용에 최대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는 부여군청렴서약제 이행대상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입찰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부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부여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 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사.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중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보충 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부여군 재무회계과 경리팀(☎041-830-2189)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문화유산과 고도육성팀(☎041-830-2633)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카.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제출서류

심사 항목	제출서류	확인처 등
공통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실태조사 동의서	공고문 첨부: [첨부 1]
	타업종 보유 신고, 확인서	공고문 첨부: [첨부 2]
기술능력	건설기술자보유 현황표 (최근 3개월) [건설업종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종별 작성]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1]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 또는 경력증(자격증) 사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자격증 발급처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취득자,상실자 포함) [기술자가 법인 대표자의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근로복지공단
	근로계약서 사본	
	건설기술인 급여 이체 내역(은행발급분, 최근 3개월)	
	건설기술인 월급명세서	

심사 항목	제출서류	확인처 등
자본금	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근 정기결산일 기준)	국세청 홈텍스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을 포함하는 해당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처별, 매입처별)	
	세무대리인이 발행한 재무제표증명원	세무대리인 또는 회사 비치분
	계정명세서	
	현금성자산 ① 예금 계좌별 잔액증명서 ② 금융기관별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 ③ 예금 계좌별 입출금거래는 결산기준일 포함 전후 60일의 해당 거래 기간 - 입출금 거래 내역 증명 또는 확인 서류	해당 금융기관 발급분(결산일 기준) (엑셀 파일 제출 불가)
	건설공제조합 ① 출자좌수확인원 ② 융자금잔액 확인원(정기결산일 기준)	공제조합(결산일 기준)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보증금 · 임대료 이체 내역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건물내외부 사진	
시설 및 장비	법정 장비 소유(임차) 증빙자료	

※ 실태조사 문의: 건설과 건설행정팀(☎041-830-2108)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2〕

부여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부여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 · 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부여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 · 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 · 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 · 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 · 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2. 계약대금 양도 · 양수 금지

부여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여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 · 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정부의「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과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나,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 . . .

내용확인자 : ○○회사 대표 ○○○ (인)

<첨부 1>

실태조사 동의서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사무실 연락처 :)
등록업종	
입 찰 명	

1. 당사(본인)는 아래 위법 사례와 같은 거짓이나 속임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으며, **부여군수로부터 낙찰 전 실태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당사(본인)는 아래 불법 행위를 하지 않고 **부여군수가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례】

1.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거나,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지 않음
2. 건축법을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 확보
3. 타 지자체에에서 실질적 본사를 운영하면서 부여군에 형식적인 사무실을 두거나, 등록한 본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건설업 영위
4.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 자료로 자본금 충족

2024. . .

대표자 성명 : (인)

부여군수 귀하

<첨부 2>

건설업 외 다른 법률에 의한 등록(면허, 허가 등) 업종 보유 신고, 확인서

보유업종	법정 자본금	법정 기술자수	입종 등록번호	등록 취득년월일	등록관청 및 관련협회

※ 건설업 이외의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공사업 등 회사 보유 기타업종을 누락 없이 기재하되, 상기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

※ 본 확인서는 건설업 등록기준 상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 등 중복여부 판단자료로 미기재 및 허위기재서류 제출 적발 시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업종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청서류를 부적격한 것으로 처리 함

동 신고서의 내용이 착오, 허위 등 사실과 다름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동 서류를 제출하는 당사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상호
대표자 (인)

붙임 : 보유업종 면허(등록, 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각 1부